

1. 개정이유

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,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('21.3월)을 이행하고, **사전 영향평가에서 권익위가 추가로 개선권고('22.8월)한 내용을 반영하는**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(안 별표 9의2, 별표 10)

-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

나.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(안 별표 9의2, 별표 10)

-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,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

*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,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

다. 행정처분 감경 사유 구체화(안 별표 10)

- 행정처분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및 열거를 통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방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예정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- 2) 입법예고('22.08.08.~09.19.) 중 사전 영향평가에서 권
익위가 추가로 개선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의2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9의2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10 제1호나목 본문 중 “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”을 “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”로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“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발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- 1) 위반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의 동기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[별표 9의2]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(제31조의2제5항 관련) 1. 일반기준 가. (생략)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<u>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</u> <u><신 설></u>	[별표 9의2]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(제31조의2제5항 관련) 1. 일반기준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<u>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 <u>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</u>
[별표 10]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	[별표 10]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

처분기준(제3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(생략)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처분기준(제3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

<u>다.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의 정도,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</u> <u>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-----</u> ----- ----- -----. <u>1) 위반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</u> <u>2)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</u> <u>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의 동기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</u>
--	---